

설계 협력업체 수시모집 및 갱신심사 관련 FAQ

한국전력기술(주) 조달처

CONTENTS

1. 제출서류 기준
2. 표준인력

1. 제출서류 기준

공고안내문 기술 인력별 증명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 관련 증빙서류 등

Q. 경력수탁기관의 관련 증빙서류 내용에 국가기술자격증 및 학위 관련 내용들이 나오므로 경력수탁기관의 자료로만 제출해도 가능한지

Q & A

A. 경력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에 확인 가능한 해당내용들이 일괄기재되어 있으면 경력수탁기관의 자료만 제출가능
(예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에는 상기 해당 내용 일괄 확인 가능하므로 대체 가능

공고안내문 보유인력증명:고용보험가입증명서(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연속적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유인력으로 인정)
(단, 고용보험가입 비대상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Q. 고용보험가입증명서는 개인별로 발급해야 하나, 국민연금가입증명서는 회사 전체 인력에 대해 종합으로 발급하므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으로 대체 제출가능한지

Q & A

A. 4대보험중 신청 업체의 평가대상 기술자 보유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면 1개 자료만 제출가능

1. 제출서류 기준(계속)

공고안내문

모든 실적은 실적증명서(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실적만 인정)에 한하고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추가 첨부시에만 인정

Q & A

Q. 실적증명서 없이 계약서+세금계산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 A.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있어야 함(일반적인 적격심사 평가 제출 자료 기준)
- B.계약이행 실적증명서가 아닌 수주실적현황 제출 시 불인정

공고안내문

신용평가등급 B-급 이상

Q & A

Q. 신용평가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공공기관 입찰용이 아니어도 가능한지

- A.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한정되지 않음

2. 표준인력

공고안내문 기술자와 숙련기술자(구 기능사)로 구분

Q & A **Q. 숙련기술자(구 기능사)에 대해서는 기술자로 대체해서 평가가 가능한지**
A. 기술자와 숙련기술자(구 기능사) 는 구분되며, 기술자를 숙련기술자(구 기능사) 로 대체 평가 불가

공고안내문 표준인력대비 보유인력 비율

Q & A **Q. 표준인력계산 방식 예시 추가 가능한지**
A. 기본적으로는 표준인력 구성에 맞춰야 함
○ 등급별 보유인력 없는 경우 해당등급보다 상위 등급 대체 가능
○ 요구되는 표준인력보다 많은 경우에는 표준인력 초과인력부터 등급별 점수 부여(표준인력산식sheet 참조)

2. 표준인력(계속)

□ 인력산정 예시

○ 기본 원칙

① 해당분야 기술자/숙련기술자(기능사) 각각 분리 평가

- 기술자/ 숙련기술자(기능사) 간 인력 상호 보완 불가능, 다만 각각 기술자/ 숙련기술자(기능사) 내에서는 인력 상위 등급일 경우 하위 등급 보완 가능
- 등급별 표준인력 요구인원 만족 후 초과 인력의 점수 인정

② 평가 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평가점수가 최종 평가점수임

- 단, 숙련기술자(기능사) 가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기술자와 숙련기술자(기능사) 표준점수의 합계에서 각각의 표준점수가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술자와 숙련기술자(기능사) 의 평점을 계산하여 합산한 점수가 최종 평가점수임

2. 표준인력(계속)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표준점수	고급숙련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표준점수	표준점수합계	최종평가점수 (모집공고 8페이지 참조)
계수	4	3	2	1.5	1		1.5	1	0.5			
표준인력	0	1	1	2	2	10	0	1	0	1	11	
예시1	1	1	2	2	2	16	1	1	2	3.5	19.5	$(16/11)+(3.5/11)=177\%$ (35점)
예시2	0	2	0	2	2	10	1	1	2	3.5	13.5	$(10/11)+(3.5/11)=123\%$ (32점)
예시3	0	0	0	20	0	5	1	1	2	3.5	8.5	$(5/11)+(3.5/11)=77\%$ (26점)
예시3-1	0	0	0	0	20	2	1	1	2	3.5	5.5	$(2/11)+(3.5/11)=50\%$ (23점)
예시4	0	6	0	0	0	10	1	1	2	3.5	13.5	$(10/11)+(3.5/11)=123\%$ (32점)

(예시1) 표준인력 대비 각 등급별 보유인력 수가 초과할 경우 초과 점수 부여

(예시2) 표준인력 요구 각 등급별 보유인력은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표준요구 인력 상위등급 인력이 많은 경우
 → 점수산정 : 표준인력으로 산정(즉 고급기술자 1명이 요구되나 특급이 2명인 경우 특급요구인원을 만족하고 남은 1명은 고급기술자등급으로 평가)

(예시3) 각 등급별 표준인력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특정 등급의 인력만 보유한 경우
 → 점수산정 : 해당 등급요구인원과 하위등급 요구인원 해당 점수만 취득

(예시3-1) 각 등급별 표준인력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최하위 특정 등급의 인력만 보유한 경우
 → 점수산정 : 해당 등급 요구인원 점수만 취득

(예시4) 각 등급별 표준인력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특정 상위 등급의 인력만 보유한 경우
 → 점수산정 : 하위등급 요구인원 해당 점수만 취득